

의안번호	제 413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6월 29일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13
----------	-----

제출연월일 : 2016년 6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16.12.26.)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16. 12. 27 ~ '19. 12. 26)
- 위 치 : 충청북도 소재
- 수탁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 ※ 現 수탁기관 : 충북대학교 병원(센터장 이상수, '13. 12. 27 ~ '16. 12. 26)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업비 : 589백만원(국비 70%, 도비 30%)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 주요사무
  - 치매관리사업 계획, 치매 연구 및 조사
  -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치매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 ※ 위탁 기본계획 별첨

### 3. 참고사항

#### 가. 現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현황

- 센터 설립 경과
  - 보건복지부 광역치매센터 설치 공모('13. 6. 10)
    - ※ 충북대학교 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모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선정('13. 7. 10) \* 우리도 : 충북대학교 병원선정
    - ※ 15개 시·도, 25개소 신청 → 11개 시·도, 11개 기관 선정
  - 충북광역치매센터 개소('13. 12. 27)
- 수탁기관 : 충북대학교 병원
  - 위·수탁 기간 : '13. 12. 27 ~ '16. 12. 26
- 사업비 : 589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기준 : 광역치매센터 운영지침(보건복지부)
- 센터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
- 조직·인력 : 9명(센터장1, 사무국장 1, 팀원 7)
  - ※ 센터장 : 이상수(충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전문의)

#### 나. 관계법령 : 별첨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충북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충북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16.12.26.)됨에 따라 지역치매 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기관을 선정,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공개모집 / 민간위탁(3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

## I.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II. 위탁개요

- 위탁 기간 : '16. 12. 27. ~ '19. 12. 26.(3년)
  - 위탁 범위 : 충북 광역치매센터 운영 전반
  - 위탁 방법 : 공개모집(병원급 의료기관)을 통한 민간위탁
  - 위탁사업비: 589백만원(국비 70%, 도비 30%)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 사무
    - 치매관리사업 계획, 치매연구 및 조사, 치매 관련 종사인력 교육
    -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기술지원,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 ※ 現 수탁기관 : 충북대학교 병원(센터장 이상수, '13. 12. 27 ~ '16. 12. 26)

## III. 추진체계 및 절차

① 기본계획	• 기본계획 수립	'16. 6월
② 의회동의	• 민간위탁 의회동의(7월 회기중)	'16. 7월
③ 수탁공고	• 수탁기관 공고 - 방법 : 공개모집(90일 공고) - 자격 : 병원급 의료기관	'16. 7~10월
④ 수탁심사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구성 : 6~9명 정도 - 심사 :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 - 결정 : 최고 득점자 선정	'16. 11월
⑤ 협약공증	• 협약체결 및 공증	'16. 12월
⑥ 사무개시	• 위·수탁 사무개시	'16. 12. 27

## IV. 세부추진계획

### ① 수탁기관 선정공고

- 공고기간 : '16. 7 ~ 10월(90일)
-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 위탁조건
  - 보조사업비의 추가지원 없음, 복지부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침 적용
  - 사업공간확보 및 임대운영시 임대보증금 수탁기관에서 부담

### ②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개최시기 : '16. 11월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준용
  - 구성인원 : 6~9명정도(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 당연직 3(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기타(전문가) 위촉
  - 심사항목 : 신청기관의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충실도 등
- 계획설명 : 공모기관별 각 20분 이내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정(고득점자 선정)

### ③ 협약체결 및 공증

- 체결 시기 : '16. 12월
- 내 용 :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 업무 인계·인수

## V.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6. 7월
- 수탁기관 선정공고 : '16. 7~10월(90일)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6. 11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16. 12월
- 위·수탁사무 개시 : '16. 12. 27

## 관계법령 발취

###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⑤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관 만료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 연장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